

2026년 청년인턴 공개경쟁 채용 공고

창원시설공단 청년인턴 공개경쟁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0일

창원시설공단이사장

I. 채용분야 및 인원: 1개 분야 7명

가.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채용직종		인 원	응시 자격
청년 인턴 (기간제)	고객 관리	7명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만18세~만34세 이하인 자 ▶성별, 학력제한 없음 ▶자격제한 없음

나. 계약기간: 2026. 8. 1. ~ 2026. 9. 30.

다. 근무장소: 창원시설공단 각 사업장 안내실

라. 수행업무: 회원접수, 고객응대 등 종합안내실 고객관리 전반 등

II. 기본(공통) 자격

가. 연령기준일: 2026. 8. 1.(토)

나. 주소지, 성별, 학력 제한 없음

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만18세~만34세 이하인 자

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제대군인에게는 다음과 같이 응시 상한 연령을 연장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 1년 이상 ~ 2년 미만: 2세 / 2년 이상: 3세)

라. 남성의 경우 병역법상 문제가 없는 자(병역기피 사실이 없는 자)

마. 공단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 하지 않은 자

바. 창원시설공단 인사규정 제14조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14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3. 공정하지 못한 방법에 의해 합격한 비위 채용자로, 합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Ⅲ. 전형일정 및 방법

가. 전형일정

▶ 공고기간: 2026. 7. 10. (금) ~ 7. 20. (월)

▶ 공고방법: 市, 공단 홈페이지, 클린아이, 잡플러스 공고문 게시

구분	원서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계약체결
일정	7. 14.(화) ~ 7. 20.(월)	7. 22.(수)	7. 24.(금)	7. 28.(화)	7. 31.(금)
방법	방문접수 (우편불가)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제출서류 적격심사	면접평정표 심사	개별 통보	인사노무팀 내방

※ 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 등 채용관련 사항은 개별공지 함

나. 전형방법: ① 서류전형 → ② 면접심사

① 서류전형

- ▶ 심사방법: 채용분야 지원 자격 기준에 대한 적격성 여부(서면 심사)
- ▶ 심사대상: 응시자 전원
- ▶ 심사기준: 자격 기준 적격여부 심사(객관적인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② 면접심사

- ▶ 심사방법: 면접 평정표에 의한 블라인드 면접
- ▶ 심사대상: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 면접심사표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			중			하
	20	18	16	14	12	10	5
가.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다. 최종합격자 결정

- ▶ 면접심사 결과 위원들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 동점자 발생 시 각 항의 순으로 합격자 결정

①	취업지원 대상자
②	사회적약자(북한이탈주민, 장애인)
③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④	면접평가 우수자 (‘상’ 의 개수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상’ 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 의 개수가 많은 사람)
⑤	청년의무고용대상자

- 예비합격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고, 채용비리로 인해 합격자가 불합격 처리되거나 채용이 취소되어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원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점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 결정

IV. 가점여부

구 분	세 부 내 용	가산점수	비고
취업보호 (지원) 대 상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 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에 따른 취업보호(지원)대상자	5~10점	중복 가점 불가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3점	
북한이탈 주 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취업지원대상자는 국가 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에 기재된 가점을 적용

V. 보수 및 복무

가. 보수기준: 2026년 기간제 근로자 관리·운영 계획 임금 기준 적용

▶ (일급) 82,560원 / (시급) 10,320원

나. 복무기준: 공단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함

VI.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7. 14.(화) ~ 7. 20.(월) / 09:00 ~ 18:00

나. 접 수 처 : 창원시설공단 인사노무팀

다. 원서교부 : 공단홈페이지→알림마당→채용정보(공고문 첨부)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대리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우편접수 불가 / 토·일요일, 공휴일 및 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 ▶ (필수)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각1부
- ▶ (필수)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자필 작성)
- ▶ (필수)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자필 작성)
- ▶ (필수) 공정채용 확인서(자필 작성)
- ▶ (필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자필 작성)
- ▶ (필수)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원본 제출)
 - ※ 공고일 이후 발행본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생략
- ▶ (해당자) 가점부여 증명서 원본
- ▶ (해당자) 대리인 위임장
- ▶ (요청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응시원서 및 채용관련 서류 반환 요구 시)
- ▶ (요청자) 채용 이의신청서

VII. 유의 사항

가. 합격취소 및 응시자격 제한 조치

- ▶ (합격취소) 응시원서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공단 공무원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응시제한)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채용에 지원했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 채용 도중이라도 채용절차 진행을 중지하거나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으며,
 - 절차 중지일 또는 합격 취소일로부터 5년간 응시 제한

나. (이의신청) 전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자필서명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방법: 팩스(055-712-0069) 또는 기간제 채용 담당자 앞으로 우편발송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450, 창원시설공단 인사노무팀)

다. 제출된 서류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접수된 채용서류 반환을 원하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합격 발표일 이후 14~18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해당 선발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마. 예비합격자는 채용인원 대비 차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계약 중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포기할 경우 차점자가 계약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 바. 사정에 의하여 본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팀 사무실(055-712-0062)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응시원서 외 9종 각 1부.